

- 2018년 2분기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 분야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특정감사 결과보고

감사 결과

- ▶ 2017년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2018년 1분기에 이어 2분기 업무처리내역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음.
- ▶ 주민등록 과태료, 주민등록증 수수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 수입증지 일일 결산 등 총 29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 행정상 조치(시정 20건, 주의 9건), 재정상 조치 232,600원(과오납금반환 11,300원, 환급 130,000원, 추징 91,300원)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I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 2018년 감사 종합계획 [감사실-8032 (2017. 12. 28.)]

2 감사대상기관 및 범위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기간 : 2018. 7. 23. ~ 2018. 7. 27.(5일간)
- 감 사 장 : 상설감사장
- 감사대상 : ☒☒☒☒ 등 13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감사분야 :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 분야(2018년 2분기)

3 증점감사 사항

분야	감사사항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분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 과태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증, 재등록 신고 등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말소 처리 실태 등 ○ 통합민원발급기 수입증지 납부 처리 ○ 세외수입 거래통장 관리 실태 등

II 감사대상기관 주요현황

1 일반현황

(기준일 : 2018. 6.30.)

기관명	면 적 (km ²)	세대수	인 구(명)			행정조직		행정인력 (정원/현원)
			계	남	여	통	반	
계	50.78	126,219	339,618	168,991	170,627	487	2,515	159/152
옥련1동	2.15	8,406	21,526	10,718	10,808	32	152	12/12
옥련2동	1.93	8,091	22,622	11,214	11,408	28	169	12/12
선학동	2.41	8,171	18,798	9,586	9,212	36	176	13/13
연수1동	1.52	10,670	22,818	12,326	10,492	49	254	13/13
연수2동	1.0	9,818	23,075	11,335	11,740	35	210	13/13
연수3동	1.0	7,644	18,308	8,707	9,601	33	165	13/13
청학동	2.39	12,578	27,716	14,280	13,436	47	259	13/13
동춘1동	3.30	5,980	17,976	8,851	9,125	33	141	10/9
동춘2동	1.72	6,918	20,145	9,938	10,207	30	131	10/9
동춘3동	0.7	5,824	19,685	9,599	10,086	28	113	10/10
송도1동	9.7	10,744	34,629	17,068	17,561	39	194	11/10
송도2동	12.22	17,508	53,878	26,398	27,480	57	322	17/14
송도3동	10.74	13,867	38,442	18,971	19,471	40	229	12/11

2 업무처리 현황

(기준일 : 2018. 6.30.)

기관명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말소	비고
옥련1동	8	133	216	1	
옥련2동	9	213	347	2	
선학동	18	150	219	7	
연수1동	54	218	317	19	
연수2동	14	221	346	16	
연수3동	7	158	236	2	
청학동	27	196	318	28	
동춘1동	5	152	258	2	
동춘2동	5	142	205	5	
동춘3동	3	126	223	-	
송도1동	11	343	496	6	
송도2동	18	228	458	15	
송도3동	13	235	362	7	

Ⅲ

감사 결과

1 총 평

- ▶ 우리구에서는 13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종합 감사(동별 3년 주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사례를 전파하고 업무연찬을 실시 하였으나,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발령과 업무분장 변경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 ▶ 이에 따라,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2018년 분기별로 3회에 걸쳐 특정감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분기에 이어 2018년 2분기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특정감사를 실시함.
- ▶ 감사결과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징수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분야에서 1분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감사 지적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무 종료 후 일일결산 시 영수증, 소인 및 결산대장 입력사항 등은 다시 한번 확인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답습하는 행정이 아닌 직무 교육 및 업무 연찬을 강화하여 반드시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 2018년 2분기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 분야 특정감사 실시결과 주민등록 과태료, 주민등록증 수수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 수입증지 일일결산 등 총 29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 행정상 조치(시정 20건, 주의 9건), 재정상 조치 232,600원(과오납금반환 11,300원, 환급 130,000원, 추징 91,300원)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2 지적사항 총괄

□ 처분 현황별

구 분	처 현 황	행 정 상 조 치(건)		재 정 상 조 치(원)		신 분 상 조 치(건)	1분기 (처분보류 건)
		시정	주의	환수.환급.추징			
계	29	20	9	총계 과오납금반환 환급 추징	232,600원 11,300원 130,000원 91,300원	-	7건
▨ ▨ ▨ ▨	2	1	1	환급	6,000원	-	1건 (환급)
■ ■ ■ ■	2	2		환급 추징	6,000원 5,000원	-	1건 (환급)
◎ ◎ ◎	1	1		환급	3,000원	-	1건 (환급)
▲ ▲ ▲ ▲	3	2	1	환급 과오납금반환	10,000원 900원	-	
⊖ ⊖ ⊖ ⊖	1	1		추징	300원	-	
● ● ● ●	2	1	1	환급	16,000원	-	
◇ ◇ ◇	1	1		환급	8,000원	-	1건 (환급)
□ □ ■ ■	2	1	1	환급 추징	5,000원 15,000원	-	
▨ ⊖ ▨ ⊖	4	2	2	환급 추징	10,000원 51,000원	-	
◐ ◐ ◐ ◐	2	2		과오납금반환 환급	400원 6,000원	-	
◆ ▲ ◆ ▲	3	2	1	과오납금반환 환급	10,000원 10,000원	-	1건 (환급)
▩ ■ ▩ ■	2	1	1	환급	29,000원	-	1건 (환급)
□ ◎ □ ◎	4	3	1	환급 추징	21,000원 20,000원	-	1건 (환급)

□ 업무 분야별

구 분	계	주민등록 과태료	주민등록증 수수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수입증지 일일결산	비 고
계	29	11	13	1	4	
▨ ▨ ▨ ▨	2	1	1			
■ ■ ■ ■	2	1	1			
◎ ◎ ◎	1	1				
▲ ▲ ▲ ▲	3	1	1		1	
⊖ ⊖ ⊖ ⊖	1				1	
● ● ● ●	2	1	1			
◇ ◇ ◇	1	1				
□ □ ■ ■	2		2			
▨ ⊖ ▨ ⊖	4		2	1	1	
◐ ◐ ◐ ◐	2	1			1	
◆ ▲ ◆ ▲	3	1	2			
▨ ■ ▨ ■	2	1	1			
□ ◎ □ ◎	4	2	2			

3 동별 처분요구 목록

연번	동명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29건(시정 20건, 주의 9건) / 재정상 232,600원 (과오납금반환 11,300원 / 환급 130,000원 / 추징 91,300원)			-	
1	 (2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과태료 경감 부적정 (1건)	시정	환급 6,000	-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미동의(1건)	주의	-	-	
3	 (2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과태료 경감 부적정 (1건)	시정	환급 6,000	-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부과 대상 건 수수료 미징수(1건)	시정	추징 5,000	-	
5	 (1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과태료 경감 부적정 (1건)	시정	환급 3,000	-	
6	 (3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과태료 경감 부적정 (1건)	시정	환급 10,000	-	

연번	동명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7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미동의(1건)	주의	-	-	
8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일일결산대장 금액입력 오류	시정	과오납금변환 900	-	
9	①①①①① (1건)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결손처분 누락	시정	추징 300	-	
10	●●●●● (2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과태료 경감 부적정 (2건)	시정	환급 16,000	-	
1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미동의(30건)	주의	-	-	
12	◇◇◇ (1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과태료 경감 부적정 (1건)	시정	환급 8,000	-	
1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미동의(3건)	주의	-	-	
14	□□■ (2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면제 해당 건 수수료 징수(1건) 수수료 부과 대상 건 수수료 미징수(3건)	시정	환급 5,000 추징 15,000	-	
15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결손처분 누락, 결손금액 오류 등	시정	추징 51,000	-	
16	▣①①①① (4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면제 해당 건 수수료 징수(2건)	시정	환급 10,000	-	
17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 사실조사서 조사자 확인 누락 등 작성 소홀	주의	-	-	
18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미동의(3건)	주의	-	-	
19	●●●●● (2건)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일일결산대장 이기오류	시정	과오납금변환 400	-	
20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과태료 경감 부적정 (1건)	시정	환급 6,000	-	
2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과태료 경감 부적정 (1건)	시정	환급 10,000	-	
22	◆▲◆▲ (3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미동의(3건)	주의	-	-	
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면제 해당 건 인증기 인증처리	시정	과오납금변환 10,000	-	
24	▣■▣■ (2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과태료 경감 부적정 (5건)	시정	환급 29,000	-	

연번	동명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25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미동의(2건)	주의	-	-	
26	□○□○ (4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과태료 경감 부적정 (2건)	시정	환급 16,000	-	
27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 부적정 (1건)	시정	추징 20,000	-	
28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면제 해당 건 수수료 징수(1건)	시정	환급 5,000	-	
29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미동의(2건)	주의	-	-	

IV

분야별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 주민등록 과태료 분야

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 ■■■■, ○○○○, ▲▲▲▲, ●●●●, ◇◇◇, ①①①①, ◆▲◆▲,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 환급 6,000원 / ■■■■ 환급 6,000원 / ○○○○ 환급 3,000원 / ▲▲▲▲ 환급 10,000원 / ●●●● : 환급 16,000원 / ◇◇◇ 환급 8,000원 / ①①①① : 환급 6,000원 / ◆▲◆▲ : 10,000원 / ▤▤▤▤ : 환급 29,000원 / □○□○ : 환급 16,000원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각 10만원 이하 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2017. 12.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이 개정되었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일제정리기간 이외의 기간에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였어야 한다.

- 그러나, □□□□ 외 9개 동에서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하였어야 하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한 사실이 있다.

2.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20,000원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각 10만 원 이하 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의하면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2)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직권거주 불명등록 후 주민등록 재등록 지연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대상자의 공고만료일이 2018. 3.30. 으로 지연기간이 1월 이내로 부과하였어야하나 신고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지연 과태료 7일 이내로 부과한 사실이 있다.

2) 이때 최고 또는 공고기간이 예를들어 2010. 8. 31로 만료된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2010년 9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주민등록 사무편람 195p~196p)

■ 주민등록증 수수료 분야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³⁾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
- 3)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2.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영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영 제40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 5. 영 제40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 4)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3. ~ 4. (생략)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 서식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르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란이 명시되어 있으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주민등록증] 외 7개 동에서는 분실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처리하면서 수수료 면제자에 대하여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고 해당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주민등록증] 추징 5,000원 / [주민등록증] 환급 5,000원 추징 15,000원, / [주민등록증] 환급 10,000원 / [주민등록증] 과오납금반환 10,000원 / [주민등록증] 환급 5,000원

-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 5)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40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5. 영 제40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또한,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五.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사진이나 글씨 등이 닳아 없어짐 등), 성명·생년월일 또는 서열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이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이 부족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 재해·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미용·단순한 용모변경·사진변경·성형으로 인한 용모변경 등은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편, 보안 미적용증(2006.11.1.이전 발급된 증)은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수수료는 무료이나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그러나, ■■■■■ 외 4개 동에서는 분실 또는 훼손(본인부주의), 용모변경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대상임에도 수수료를 미징수 하거나, 2006.11.1.이전 발급된 증을 반납하여 보안기능추가로 재발급 또는 성명 변경 등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수수료 5,000원을 징수하였고, 보안기능추가로 재발급 신청한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의 반납사실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미부과한 사실이 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분야

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

조사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二. 주민등록사항의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에 따르면 사실조사의 요령으로 사실조사서에 신고의무자(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의 확인을 받고,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통·리장 또는 공무원의 사실조사로써 갈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주민센터에서는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하면서 사실조사서 작성 시 신고의무자 또는 통·리장 확인 및 조사일자, 조사자 확인을 누락하여 사실조사서 작성을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다.

■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 분야

1.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①①①①, ☐①☐①, ①①①①]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 과오납금반환 900원 / ①①①①
① 추징 300원 / ☐①☐① 추징 51,000원 / ①①①① 과오납금반환 400원

- 「주민등록법」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일일 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생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 시 잘못 발행 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확히 확인하여 수입증지 수입금을 납입하였어야 한다.
- 그러나, ▲▲▲▲의 3개 동에서는 면제, 공용 인증 또는 인증을 누락한 서류를 결손 처리하거나, 결손 누락, 결손 건수 및 금액 오류, 수입금 계산오류, 결손 증빙서류 미첨부 등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 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수입금을 적게 납입하거나 많이 납입한 사실이 있다.

V 개선사항

분야	현실태	개선사항	관련부서
주민등록 및 일일결산	- 각 동 민원실에 신규 직원들이 많고, 인사발령에 따라 잦은 업무분장 변경이 있음. - 통합민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 일일결산 시 업무별 담당자는 민원서류 처리내용 및 수수료 부과징수, 관련 대장 정리 등을 확인하고 업무를 마감하여야 하며, 1분기 점검으로 2분기에는 상당 부분 개선됨. -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각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는 기존 담당자의 처리방식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 할 것. - 주민등록 담당자의 관련 법규 및 지침 숙지를 위한 업무연찬 필요. - 일일결산 시 반드시 담당업무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재확인하고, 수수료인증 금액 적정여부 등을 확인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	동주민센터